

# 입.출금, 대체 및 이체거래, 증권카드 이용에 관한 약관

## 제1장 목적 및 용어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메리츠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에서 제공하는 계좌의 입.출금, 계좌간 대체거래와 타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과의 이체출금 및 증권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대금 결제 이용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권카드 : 고객이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인출기, 무인공과금수납기(이하 ‘자동화기기’라 한다) 및 영업점을 이용하여 자금의 입.출금, 증권입.출고, 계좌간 대체거래, 은행이체출금 또는 공과금수납 등 업무 처리를 하거나 현금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 대금을 결제할 목적으로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비밀번호[PIN(Personal Identity Number) 포함. 이하 ‘비밀번호’라 하며, 비밀번호라 함은 ‘PIN’을 포함한다]를 신고하여 교부받은 고객 카드를 말한다.
2. 통장 : 고객이 당사 자동화기기 및 영업점을 이용하여 자금의 입.출금, 증권의 입.출고, 계좌간 대체거래, 은행이체출금 또는 공과금수납 등 업무 처리의 목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부받은 모든 통장을 말한다.
3. 등록계좌 : 고객이 회사에 사전에 등록한 고객 명의의 타 금융기관 및 회사계좌를 말한다.
4. 계좌간 자금대체 :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HTS/홈페이지/스마트폰/ARS 등 온라인매체(이하 ‘전자적장치’라 한다), 영업점 및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고객 계좌에서 출금하여 고객이 지정하는 회사에 개설된 본인계좌 또는 타인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말한다.
5. 은행이체출금 :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점, 전자적장치 및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고객 계좌에서 출금하여 고객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말한다.
6. 유가증권 대체 :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점,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고객 계좌에서 유가증권을 출고하여 회사 및 다른 증권회사에 개설된 본인계좌 또는 타인계좌로 입고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용매체 :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적장치 중 고객이 별도로 이용 신청을 한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8. 보안매체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안카드와 OTP생성기 또는 회사에 사용등록된 은행에서 발급받은 OTP생성기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9. 연계계좌 : 이체 입.출금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한 은행(이하 “제휴은행” 이라 한다)에 개설된 고객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

10. 은행연계대표계좌 : 은행을 통한 연계계좌 입.출금 시 거래가 발생하는 개별계좌

11. 종합계좌 : 고객이 회사와의 거래를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로서 종합계좌약관에 따라 당사가 제공하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서비스를 동일한 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구현된 계좌를 말한다.

12. 개별계좌 : “종합계좌” 내 직접 입.출금/고 대상이 되는 계좌를 말한다.

13. 거래인감 : 고객이 출금/고, 계좌간 대체거래 또는 이체출금 및 업무 처리 시 날인하는 사용인감을 말한다.

14. 비밀번호 : 고객이 출금/고, 계좌간 대체거래 또는 이체출금 및 업무 처리 본인 여부를 인증하는 번호를 말한다.

15. 이체서비스 : “이체서비스” 란 고객의 사전 신청에 의해 대체 및 이체 입출금 되는 서비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등록계좌 은행이체 및 계좌간대체 : 고객이 전화를 이용하여 회사의 고객계좌에서 출금하여 고객의 회사 또는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

나. 정기출금 대체 및 이체 : 지정된 일자에 지정된 금액을 회사계좌 또는 은행의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하여 주는 서비스

다. 수시입금이체 : 채권의 이자, 채권만기상환 원리금, 예탁금이용료 및 배당금 등을 회사 또는 은행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서비스

라. 공모주환불금이체 : 공모주 환불금을 회사 또는 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서비스

마. 업무협약 : 고객의 사전 신청에 의하여 등록된 계좌로 은행이체출금이 되도록 하는 서비스

바.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 전자적장치를 이용하여 타기관으로 송금 및 회사에 개설된 타인계좌로 송금을 하는 경우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만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

사. 간편이체 : 고객이 사전에 간편인증 또는 바이오 인증을 등록한 스마트폰 단말에서 해당 인증방법으로 로그인하여 이체 또는 대체출금 시 공인인증서 및 보안매체를 생략하여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16. 가맹점 :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증권카드 결제거래를 위해 VAN사와 계약을 체결해 현금IC카드 결제단말기를 설치하고, 회사 또는 은행에 현금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자의 운영 점포

17. 실시간 계좌이체(PG) : 고객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쇼핑몰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실시간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2장 입.출금 등

**제3조(입.출금/고 및 이체거래)** ① 고객은 영업점, 전자적장치 또는 자동화기기를 통하여 회사에 개설되어 있는 고객 계좌에 자금의 입.출금, 회사에 개설된 본인 또는 타인 계좌로의 대체거래, 은행 계좌로의 이체출금 및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실시간 계좌이체 거래를 할 수 있다.

② 고객은 영업점에서 출금/고, 대체거래 또는 이체출금 시 증권카드(또는 통장)을 제시하고 거래인감(또는 서명)을 날인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계좌간 대체거래 또는 이체출금 시 입금 계좌가 제2조의 3호에 의한 등록계좌일 경우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하여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계좌간 대체거래는 등록된 종합계좌에 개설되어 있는 개별계좌간에는 쌍방으로 대체 입.출금/고가 가능하다.

⑤ 회사는 등록된 계좌로 대체출금/고 및 이체출금 신청을 제3항에 따라 유선으로 접수받을 경우 고객이 신고한 거래인감(또는 서명감)을 날인(또는 서명)한 출금전표 없이 처리한다.

⑥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이체출금을 요청받은 경우 제휴은행의 연계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처리할 수 있으며, 고객이 타 은행의 계좌에서 이체입금을 할 경우 종합계좌에 종합계좌별로 연결되어 있는 연계계좌를 통하여 입금이 가능하다.

⑦ 고객이 제6항의 연계계좌로 입금 할 경우 사전에 고객이 지정한 은행연계대표계좌로 입금된다.

**제4조(이용매체를 이용한 계좌간 자금대체 및 은행이체출금)** ① 회사의 온라인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이 되어 있는 고객이 회사로부터 보안카드 또는 OTP생성기

를 직접 교부받거나 은행에서 발급받은 OTP생성기를 회사에 사용 등록한 경우 이용매체를 통하여 고객계좌에서 출금하여 회사의 다른 계좌로의 대체출금 또는 은행의 불특정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또는 OTP생성기에 생성된 일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온라인 은행이체 거래의 유효성을 체크한다.

## 제3장 대체 및 이체 거래 서비스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및 개시)** ① 제2조의 15호에 따른 이체서비스의 업무 계약은 영업점 및 비대면 실명확인 또는 전자적장치를 통하여 고객의 신청내용이 회사 전산상 정상적으로 등록 완료된 시점부터 성립된다.

② 고객은 회사의 전자적장치를 통하여 제2조의 은행이체출금, 계좌간 자금대체 등의 업무를 할 경우 온라인서비스 이용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로부터 보안카드 또는 OTP생성기를 직접 교부받거나 은행에서 발급받은 OTP생성기를 회사에 사용 등록한 시점부터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업무협약 서비스)** ① 법인 고객은 지정한 은행으로만 이체출금이 될 수 있도록 업무협약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업무협약 등록 가능한 은행계좌는 등록계좌은행이체 서비스를 신청한 계좌 중에 선택 가능하며, 복수개의 은행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 및 이체 거래의 취소)** ① 제5조의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 영업점에 신청서를 제출 또는 전자적장치를 통하여 이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 전산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시점부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예약이체 취소는 고객이 지정한 출금일의 처리시각 1시간30분전까지 전자적장치 또는 영업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연이체 취소는 처리시각 30분전까지 전자적장치 또는 영업점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장 증권카드

**제8조(증권카드 발급)** ① 증권카드는 종합계좌별로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발급하며, 카드에 수록되는 개별계좌 수는 10개까지 가능하다.

② 회사는 개인 고객으로부터 증권카드 발급 신청을 받을 때 제9조 제3항의 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한 고객의 의사를 확인한다.

**제9조 (증권카드의 이용)** ① 고객은 증권카드를 이용하여 영업점에서 자금의 입.출금, 증권입.출고, 계좌간 대체거래 및 이체출금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개인 고객은 증권카드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지점 및 CD공동망 참가은행(이하 ‘참가은행’이라 한다)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통장이나 청구서 또는 수표 등의 제출없이 자금의 입금 또는 출금, 잔액조회 및 계좌이체 및 공과금 납부 등을 처리할 수 있다.

③ 개인 고객은 증권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 가맹점에서 일시불에 한하여 CMA자산관리계좌의 출금가능금액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거래는 IC기반으로 발급된 모든 개인 고객의 증권카드로 이용이 가능하며, 회사는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사전에 회사에 신고된 정보와 일치할 경우 이용자를 계좌주로 인정하고 거래에 응한다. 다만, 은행과 소액거래(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하여 카드의 본인확인 생략 특약을 체결한 가맹점에서는 카드의 비밀번호 입력 생략이 가능하다.

⑤ 개인 고객은 제3항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 이용 해지 신청(또는 취소)을 할 수 있고, 이용 해지 신청 후 다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다시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고객이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가맹점에서 증권카드 이용 후 이용대금이 고객의 결제계좌에서 자동 출금되어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계좌주가 반품.취소 등의 이유로 가맹점과 합의하여 해당거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의 카드단말기를 통해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의 결제계좌로부터 출금하였던 금액을 같은 결제계좌로 입금한다.

⑦ 고객은 가맹점에서 거래취소 시 부득이한 여건에 의하여 단말기에 의한 취소가 불가능할 경우 고객은 가맹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직접 환불받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기로 하며 회사는 동 처리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⑧ 고객은 자동화기기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 회사의 영업점에 출금전표 등의 신청서에 거래인감(또는 서명) 날인(또는 서명)하고 증권카드(또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제시하여 자동화기기에서 가능한 입.출금, 계좌간 대체출금, 이체출금 및 공과금 수납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다.

**제10조(증권카드의 사용중지)** ① 자동화기기의 고장, 정전, 온라인 장애 및 사고 발생 시 회사 및 참가은행은 일시적으로 증권카드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온라인 마감, 결산을 위한 일시 전산가동 중단 시 및 예금잔액 확인을 즉시 할 수 없어 가맹점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③ 회사는 증권카드를 이용한 거래 시 계좌 비밀번호 오류입력 횟수 초과, 잔고증명서 발급, 지급제한, 증권카드 분실 사고신고 접수, 출금정지 사고신고 접수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제한한다.

**제11조(증권카드의 회수)** ① 증권카드 거래 시 회사 및 참가은행간 업무 처리절차에 의한 카드 회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화기기에서 직접 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 제5장 이용시간 및 이용한도

**제12조(이용시간)** ① 입.출금, 계좌간 대체거래, 은행이체출금 및 증권카드를 이용하여 가맹점을 통한 결제서비스 이용 시간은 <별첨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가은행의 고장, 정전, 온라인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13조(이용한도)** ① 전자적장치를 이용한 은행이체출금,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출금 및 은행이체출금, 가맹점을 통한 증권카드 결제서비스 거래 시 이용한도는 <별첨 2>의 범위 이내로 한다.

② 고객은 이용한도의 증액 신청은 영업점 또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감액 신청은 영업점 또는 전자적장치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한도는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등 전자적 장치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등 전자적 장치에 변경예정일 1개월 전부터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④ 입금계좌지정서비스의 이용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 계좌로의 송금 이용한도는 <별첨 2>의 범위 이내로 한다
2. 미지정 계좌로의 송금 이용한도는 서비스 약정 시 설정한 이용한도 범위 이내로 한다.

⑤ 회사는 고객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한도를 다음 각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1. ARS를 이용하여 미등록된 전화번호로 송금하는 경우 이용한도를 제한
2. 1년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자동화기기 출금한도를 제한

⑥ 간편이체 이용한도는 횟수에 제한 없이 1일 최대 100만원이내 가능하다.

## 제6장 수수료

**제14조(수수료)** ① 자금의 입.출금 및 은행이체출금 서비스 이용 시 <별첨 3>과 같이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는 고객이 부담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기준을 고객에게 안내한다.

## 제7장 분실,도난 및 재발급

**제15조(분실, 도난 등)** ① 고객은 회사에서 발급받은 증권카드, 통장, 보안매체 및 고객의 거래인감 등 중요증서를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의 경우에는 즉시 영업점, 고객지원센터(☎1588-3400)를 통해 <별첨 1>에서 정한 이용시간 중 신고하거나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뒤 효력이 생기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 한 때는 복구 등에 의해 사유 해제 시 즉시 처리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고객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재발급)** ① 회사는 제15조 제1항의 중요증서를 고객으로부터 재발급 요청을 접수한 경우 거래인감(또는 서명감)을 날인(또는 서명)을 한 신청서와 고객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수령한 후 비밀번호의 입력 등으로 재발급하여 교부한다.

② 제1항의 업무는 영업점을 통해서만 처리가 가능하다.

**제17조(면책)** ① 제15조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소액거래(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하여 카드의 비밀번호 생략으로 결제 승인 된 경우 예금주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증권카드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증권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증권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쉽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증권카드 또는 비밀번호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고객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제8장 기록유지, 거래명세 및 통지

**제18조(기록유지 및 거래명세)** ① 회사는 입.출금, 계좌간대체, 은행이체출금 등의 신청내용을 출금청구서 또는 전화 녹취로 기록·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증권카드를 이용한 자동화기기 거래시마다 거래명세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회사의 입금의뢰서 또는 출금청구서로 갈음하고 1부는 거래금액과 잔액 등을 기재하여 고객에게 교부한다. 단,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고객은 입.출금, 계좌간 대체거래, 은행이체출금 및 가맹점을 통한 현금 결제 거래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고객이 입.출금, 은행이체출금, 계좌간 대체출금 등의 자금 거래를 한 경우 이용 계좌의 거래내역에 기장하고, 월간거래명세의 발송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월간거래명세의 발송은 사전에 '통보불원(또는 HTS불원)'을 신청한 계좌는 발송이 되지 않으며, 통장이 발급된 계좌는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9장 약관의 변경

**제19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제10장 준수사항 및 기타사항

**제20조(고객준수사항)** ① 입.출금, 계좌간 대체거래, 은행이체출금 및 가맹점을 이용한 현금IC결제 등 고객 계좌의 자금이 변동하는 거래가 완료되면 신청계좌의 잔고변동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거래에 의문이나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회사(☎1588-3400)로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② 고객은 증권카드, 통장, 보안매체 등 중요증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기타)**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전자금융거래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온라인서비스이용약관, 관련 개별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관의 폐지)

이 약관 시행일부터 은행자금이체약관, 계좌간자금이체거래약관은 폐지 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약관 시행 전에 은행자금이체약관, 계좌간자금이체거래약관에 의한 이체거래 등은 이 약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09. 9. 21. 개정)

이 약관은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0. 4. 1. 개정)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2. 8. 13. 개정)

이 약관은 2012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3. 5. 6 개정)

이 약관은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4. 4. 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비스 이용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약관의 시행일 이전에 발급받은 증권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고객이 제9조 제3항의 서비스에 대하여 약관의 시행일 전영업일 <별첨 1>에서 정한 이용시간까지 회사의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 (☎1588-3400)를 통해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9조 제3항의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4. 10. 28 개정)

이 약관은 201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5. 5. 7 개정)

이 약관은 201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5. 6. 30 개정)

이 약관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5. 9. 2 개정)

이 약관은 201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3항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6. 1. 15 개정)

이 약관은 201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6. 12. 23 개정)

이 약관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바이오인증'에 관한 개정사항은 회사가 별도 공지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부칙( '17.4.2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비스 이용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약관의 시행일 이전에 간편인증 또는 바이오정보 인증 서비스를 신청한 개인 고객이 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전자적장치를 통해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13조 제6항의 간편이체 이용 한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 3. 19 개정)

이 약관은 2020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 5. 25 개정)

이 약관은 202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별첨 1>의 “이용시간” 이란 다음과 같다.

| 구분                        | 이용시간                                            |
|---------------------------|-------------------------------------------------|
|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br>현금IC결제서비스 | 00:20 ~ 23:50<br>(법인계좌 타행이체 가능시간 : 07:00~23:30) |
| 영업점                       | 평일 지점영업시간(09:30 ~ 15:30)                        |
| 고객지원센터                    | 평일 상담가능시간(08:00 ~ 18:00)                        |

2. <별첨 2>의 “이용한도” 란 다음과 같다.

■ 전자금융 매체를 이용한 이체한도

(1) 보안등급 분류

- ① 1등급(OTP 이용고객) - 고객 지정한도
- ② 2등급(보안카드발급 + SMS 알리미서비스 고객단위 신청)  
- 고객 지정한도와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중 적은 값 적용
- ③ 3등급(보안카드 발급 고객)  
- 고객 지정한도와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중 적은 값 적용

(2)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 구분    | 1등급     |          | 2등급 |      | 3등급      |          |
|-------|---------|----------|-----|------|----------|----------|
|       | 1회      | 1일       | 1회  | 1일   | 1회       | 1일       |
| 인터넷뱅킹 | 1억(10억) | 5억(50억)  | 5천만 | 2.5억 | 1천만      | 5천만      |
| ARS   | 5천만(1억) | 2.5억(5억) | 2천만 | 1억   | 1천만(1천만) | 5천만(5천만) |

※ ( )의 금액은 법인의 적용 이용한도

■ 자동화기기(CD/ATM) 이용한도

| 구분 | 1회          | 1일   |
|----|-------------|------|
| 출금 | 1백만원 이내(주1) | 6백만원 |
| 이체 | 6백만원        | 3천만원 |

※ (주1) CD/ATM기를 취급하는 기관별로 1백만원 이내에서 정할 수 있음(당사ATM : 70만원)

■ IC카드 결제서비스 이용한도

- 고객 지정한도와 아래의 기본 이용한도 중 적은 금액 적용

| 구분 | 1회   | 1일   |
|----|------|------|
| 최저 | 10원  | 10원  |
| 최고 | 5백만원 | 2천만원 |

※ 최근 1년동안 CD/ATM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거래가 없는 경우 최고한도가 1회/1일 각각 70만원으로 조정됨(단, 직전의 한도가 7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한도를 유지)

3. <별첨 3>의 “수수료” 란 다음과 같다.

■ 이체출금 수수료

| 구분   | 100만원 이하 | 100만원 초과 ~ 5억원 이하 |
|------|----------|-------------------|
| 당행이체 | 무 료      |                   |
| 타행이체 | 건당 500원  | 건당 1,000원         |

■ 온라인 이체출금 수수료

| 구분   | 당행이체 | 타행이체    |
|------|------|---------|
| 즉시이체 | 무 료  | 건당 500원 |
| 예약이체 |      |         |

■ 매월 자동이체 수수료

| 구분   | 영업점 신청  | 인터넷뱅킹 신청 |
|------|---------|----------|
| 당행이체 | 무 료     |          |
| 타행이체 | 건당 300원 |          |

■ 타행환송금 수수료(무통장송금 수수료)

| 구분                 | 수수료       |
|--------------------|-----------|
| 10만원 이하            | 건당 1,000원 |
| 1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 건당 2,000원 |
| 100만원 초과 ~ 5억원 이하  | 건당 3,000원 |

■ 자동화기기(CD/ATM) 이용수수료

| 구분         |    |      | 영업시간내                     |        | 영업시간 외 |        |
|------------|----|------|---------------------------|--------|--------|--------|
|            |    |      | 10만원이하                    | 10만원초과 | 10만원이하 | 10만원초과 |
| 당행기기<br>이용 | 입금 | 당사고객 | 무료                        |        | 무료     |        |
|            |    | 타사고객 | 800원                      |        | 1,000원 |        |
|            | 출금 |      | 무료                        |        | 300원   | 500원   |
|            | 이체 | 당행송금 | 무료                        |        | 무료     |        |
|            |    | 타행송금 | 500원                      | 800원   | 1,000원 | 1,500원 |
|            |    |      |                           |        |        |        |
| 타행기기<br>이용 | 입금 |      | ATM기 취급은행의 수수료적용(수표입금 불가) |        |        |        |
|            | 출금 |      | 500원                      |        | 800원   |        |
|            | 이체 | 타행송금 | 500원                      | 1,000원 | 1,000원 | 1,500원 |

※ 상기 수수료 면제는 회사의 고객등급 서비스 및 수수료 정책을 적용